

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민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5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최민규,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왕정순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민옥, 이병운, 이봉준, 이상욱, 이숙자, 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이은림, 이종배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이희원, 임춘대, 장태용, 정준호, 정지웅, 채수지, 최유희, 최진혁, 허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64명)

1. 제안이유

- 「국어기본법」에 따라 매년 공문서 등의 국어·한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정책 사업 행사 등의 명칭에 외국어 및 외국 문자 사용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, 외래어에 대한 대체어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사용한 명칭의 지적 사례가 다수를 차지함.
- 실태 조사에서 외래어 등의 외국어 표현은 국립국어원 제공 <다듬은 말>로 순화 또는 <표준국어대사전>, <우리말샘> 사전에 등재된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계속 제기되었음.

- 서울시 공문서 등의 올바른 국어·한글 사용을 위하여 「국어기본법」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하여 서울시 조례에 빠져 있는 부분을 추가하고, 국어책임관이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 지도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외래어 및 외국어,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도록 규정함 (안 제13조제2항제3호).
- 나.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시 소속 공무원 등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규정과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 지도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7조제2항제3호, 제5호).
- 다.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에 해당 기관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. (안 제17조제4항제4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어기본법」, 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3호 중 “피한다”를 “피하고,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 「표준국어대사전」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제3호,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,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시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

5.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 지도 및 관리

제1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해당 기관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계획 수립과 추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, 신조어 사용을 <u>피한다</u>.</p> <p>4. 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7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(생략)</p> <p>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3조(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피하고,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 「표준국어대사전」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.</u>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시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</u>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 <u>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</u></p>

<p>4.·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·4. (생략)</p>	<p><u>작성원칙 지도 및 관리</u></p> <p>6.·7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해당 기관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계획 수립과 추진</u></p> <p>4.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
--	--